

## 한인도네시아 간 특허심사고속도로(하이웨이) 8일 개통

- 한-인도네시아 양국 특허청, 특허심사고속도로(하이웨이) 시범 실시 시작(12.8) -
-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특허획득 앞당겨 지식재산권 보호 기대 -
- 인도네시아가 특허심사고속도로(하이웨이)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 -

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특허심사고속도로(하이웨이)(PPH\*) 프로그램이 12. 8.(금)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\* PPH(Patent Prosecution Highway):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,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

### <한-인도네시아 특허심사고속도로(하이웨이) 시범 실시...우리기업 특허획득 기간 단축 기대>

이번 특허심사고속도로(하이웨이)(PPH) 프로그램은 한-인도네시아 정상회담(9.8) 및 한-인도네시아 특허청장 회담(9.8)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, 협정을 맺은 상대 국가에서 특허가능성이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. 일종의 양국 간 「특허심사 고속도로」를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.

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특허획득까지의 기간은 약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우리 특허청의 특허결정\*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그 결과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획득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\* 국내 특허심사 평균 소요기간: 18.4개월('22년)

### <인도네시아, 중요한 교역 동반자...인도네시아와 특허심사고속도로(하이웨이) 체결 국가, 우리나라와 일본뿐>

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에서 올해 11월에 발표한 '23년 세계지식재산지표(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)에 따르면,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3% 증가\*해 총 9,967건에 달했으며, 이중 외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8,418건으로 전체 출원의 84.5%를 차지했다. 이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인 시장 위치와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며, 인도네시아가 세계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.

\* <참고> '22년 전 세계 특허출원 증가율은 전년대비 1.7%

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교역 동반자이자 투자 상대국이다.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를 세 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중요한 지식재산 협력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. 이러한 중요성은 '22년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25% 증가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.

< '22년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>

(단위: 백만불, 개, 건수)

	수출*	신규법인**	투자**	출원***
규모(아세안內 순위)	10,215(5위)	49(3위)	1,011(3위)	473(3위)****

\* 한국무역협회, \*\* 한국수출입은행, \*\*\*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

※ '22년 한국의 아세안 국가 출원순위(출원 건) → ① 베트남 (1,229), ② 싱가포르 (498), ③ 인니(473건), ④ 태국(245)

이번 인도네시아 추가로 우리나라와 특허심사고속도로(하이웨이)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8개국으로 늘어났다. 특히, 인도네시아가 특허심사고속도로(하이웨이)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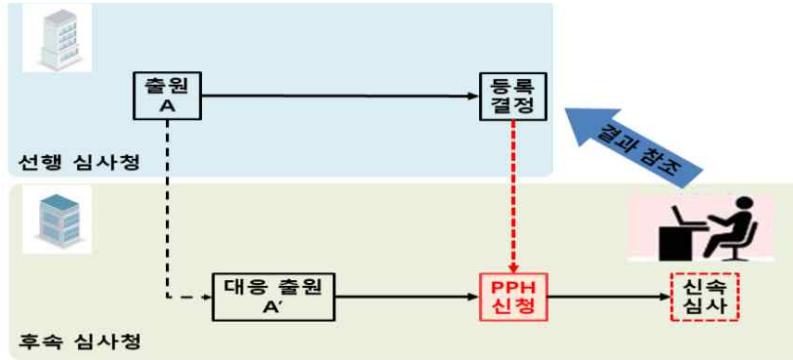
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특허심사를 우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”고 말했다.

※붙임: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 개요

담당 부서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	책임자	과 장	신동환 (042-481-8321)
		담당자	사무관	이다나 (042-481-5400)
	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정대순 (042-481-5063)
		담당자	사무관	감유림 (042-481-5936)



□ (내용) 선행청에서 국내심사(PPH)·PCT 국제조사(PCT-PPH)를 통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출원에 대해서 후속청에서 참조하여 빠르게 심사



□ (대상국가) 우리청은 38개국 특허청(특허기구 포함)과 PPH를 시행 중

IP5 PPH (4)	글로벌 PPH (26)	양자 PPH (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PO</li> <li>CHINA</li> <li>JAPAN</li> <li>USA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SWEDEN</li> <li>AUSTRALIA</li> <li>FINLAND</li> <li>UK</li> <li>DENMARK</li> <li>ICELAND</li> <li>CANADA</li> <li>PORTUGAL</li> <li>NORWAY</li> <li>SPAIN</li> <li>ISRAEL</li> <li>HUNGARY</li> <li>RUSSIA</li> <li>GERMANY</li> <li>ESTONIA</li> <li>NPI (nordic)</li> <li>POLAND</li> <li>SINGAPORE</li> <li>AUSTRIA</li> <li>ESTONIA</li> <li>CHILE</li> <li>NZ</li> <li>VISEGRAD</li> <li>COLOMBIA</li> <li>PERU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MEXICO</li> <li>PHILIPPINES</li> <li>TIPO</li> <li>EAPO</li> <li>INDONESIA</li> <li>VIETNAM</li> <li>SAUDI ARABIA</li> <li>BRAZIL</li> <li>MALAYSIA</li> <li>FRANCE</li> </ul>

□ (효과) ①신속심사, ②높은 등록 가능성, ③심사절차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

□ 시행현황 ('23.12월 기준)

○ 양자간·IP5·Global PPH 프로그램을 통해 38개 특허청(시행국은 34개, 국제기구 4개)\*과 PPH (PCT-PPH 포함) 시행 중

- \* 일본('07.4), 미국('08.1), 덴마크('09.3), 영국('09.10), 캐나다('09.10), 러시아('09.11), 핀란드('10.1), 독일('10.7), 스페인('11.7), 중국('12.3), 인도네시아('12.7), 싱가포르·헝가리('13.1), 오스트리아('13.3), EPO·호주·이스라엘·스웨덴·노르웨이·포르투갈·아이슬란드·노르딕특허기구('14.1), 필리핀('15.5), 대만('15.7), 에스토니아('15.7), 콜롬비아('16.2), 폴란드('17.1), 뉴질랜드('17.1), 비세그라드특허기구('18.1), 페루('19.1), 유라시아('19.1), 베트남('19.6), 사우디('19.7), 브라질('20.4), 칠레('20.7), 말레이시아('20.12), 프랑스('22.9), 인도네시아('23.12)